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산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http://www.k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1.5.3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7.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 이 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7432)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7801	67433	6841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까지 모집 가능(1좌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집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7432)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7801	67433	6841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가.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4.10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7.5.30	약관변경 - 종류C2 가입자격 대상에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추가
2007.6.15	운용전문인력 변경 (팀운용->김상훈)
2009.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산은 S&P 인프라주식 자투자신탁 -> 산은 S&P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09.6.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김종육, 변경 후: 유재흥
2009.12.14	집합투자규약변경 -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2) 및 기재정정
2009.12.16	집합투자규약변경 -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1)
2010.3.16	집합투자규약변경 -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2) 및 기재정정
2010.5.3	판매보수 인하(정율식)
2010.5.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유재흥, 변경 후: 서기원
2010.7.29	집합투자규약 변경(임의해지 요건 변경)

#### 나.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4.11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7.4.27	약관변경(자투자신탁 신설)
2009.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산은 S&P 글로벌인프라 주식 모투자신탁 -> 산은 S&P 글로벌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09.6.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김종욱, 변경 후: 유재흥
2009.12.14	규약 변경: 신규 설정예정 자투자신탁 추가 산은 퇴직연금 S&P 인프라 주식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u>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2)등</u>
2009.12.16	규약 변경: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1)
2010.3.16	규약 변경: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2) 등
2010.5.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유재흥, 변경 후: 서기원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산은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1.5.31 현재)

####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한철기	1969	팀장	22개	1,83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6~ 현재 산은자산운용 해외투자팀장</li> <li>- 08.3~ 10.6 신한금융투자 고객자산부 차장</li> <li>- 06.8~ 08.3 교보약사자산운용 SI 수석운용역</li> <li>- 01.9~ 06.8 동양증권증권 심사역</li> <li>- 99.12~ 01.6 마이애셋자산운용 조사역</li> </ul>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이 투자신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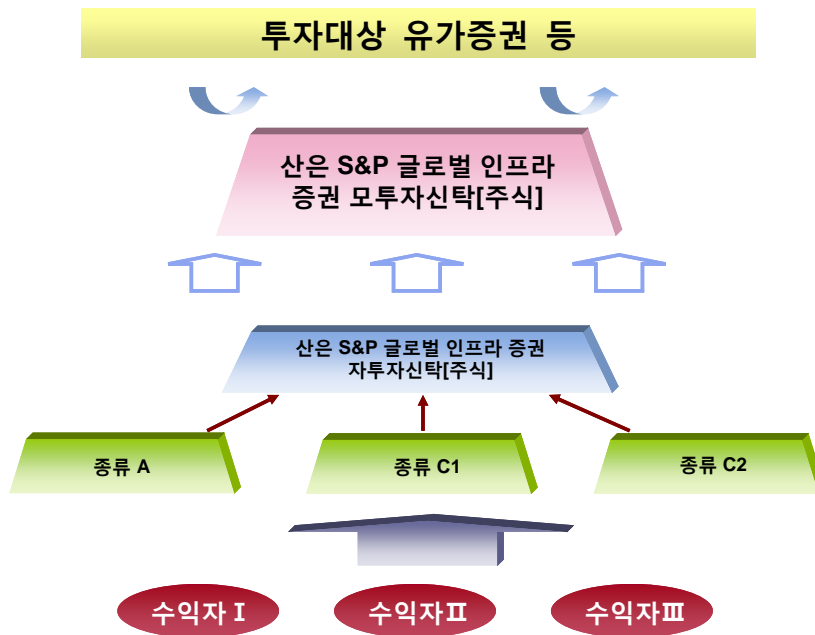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상훈	2007.6 ~ 2009.5
김종육	2009.5 ~ 2009.6
유재흥	2009.06 ~ 2010.4
서기원	2010.5 ~ 2011.6
한철기	2011.6 ~ 현재

주1) 2011년 6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음
종류 C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및 집합투자기구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

구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67493)	산은 Value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68741)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 자신탁[주식] (6743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	-
산은 퇴직연금 S&P 인프라 증권 자 투자신탁[주식] (82833)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
산은 S&P 인프라 30 증권 자투자 신탁[채권혼합] (68744)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
산은 퇴직연금 S&P 인프라주식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18128)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모투자 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해외주식 60%이상, 국내채권 40%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에 편입된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을 추구함으로써 비교지수 수익을 추종
	주요투자전 략 및 위험 관리	장기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세계 인프라 관련 상장주식에 주로(신탁 재산의 60% 이상) 투자  한편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이상에 대해 원/USD 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합니다. 단, USD(\$) 대비 이종통화 포지션에 대해서는 환헷지 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에 신탁자산의 대  
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70%이상을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비교지수의  
수익을 추종합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할 예정이며 그 이외의 거  
래·보유 통화는 환헷지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수익증권 (모투자신탁)	70% 이상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산은 S&P 글로벌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권, 주식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에 편입된 종목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 증서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⑥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외국 법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에 30%이 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해 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중인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 자기구의 경우 또는 법 시행령 제 45 조제 2 호다목 단 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집 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20% 이하)
⑦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대여
⑧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 는 경우
⑨	장내파생상품	10%이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채권 · 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 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으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
⑩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 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로서 환율위험을 헤지하 기 위한 선도환거래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 자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인과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의 거래제한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수익증권에 의 투자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 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산은 S&P 글로벌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인과 의 거래제한 등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시행령 제 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li> </ul>

	<p>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법 제 234 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의 집합투자증권</p> <p>▶ 동일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까지 :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단,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p>
<p>③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④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를 초과하는 행위</p>	
<p>⑤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⑥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⑦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⑧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⑨후순위채권</p>	<p>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li> <li>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li> <li>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ol>

<p>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⑤ 내지 ⑩, 위의 ② 내지 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li>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li> <li>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li> <li>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li> <li>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li> </ol> <p>- 위의 ② 내지 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1) 이 투자신탁은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비교지수의 수익을 추종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 ■ S&P Global 인프라 지수 설명

<p>45개국 약 11,000개 종목이 포함된 S&amp;P Global BMI Index를 Universe로 하여 글로벌 인프라 관련 기업 중 사업노출도가 높고, 거래 유동성이 양호한(시가총액 \$250M, 3개월 평균 일거래액 \$1M 이상) 종목을 선별, 수정시가총액 방식으로 구성된 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 상장 종목</li> <li>● 개별 종목한도 5%</li> <li>● 2001.11.16. 1000으로 지수 출발</li> <li>● 구성 종목수 75개</li> <li>● "S&amp;P글로벌테마지수위원회"에서 매년 2회 종목/비중 재조정 (리밸런싱)</li> </ul>
--	---	--

### ■ 세계적인 인덱스 전문회사 Standard & Poor's

객관적 서비스, 글로벌 네트워크, 검증된 레코드를 통해 일관된 가치 전달

■ S&P의 인덱스사업부는 세계적인 지수산출기관으로 다양한 투자자니즈에 부합하는 투자가능지수를 공급하고 있다. 약 1조 2,500억 달러가 S&P인덱스패밀리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어있으며, S&P지수 패밀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종하는 주식시장지수인 S&P500과 미국주택가격에 대한 주요지수인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약 11,000구성종목으로 이루어진 S&P Global BMI,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품지수인 S&P GSCI, 미국지방채권에 대한 최고의 투자가능지수인 S&P National AMT-Free Municipal Bond Index등으로 이뤄져있다. S&P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ww.standardandpoors.com/indices](http://www.standardandpoors.com/indices) 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출처: Standard & Poor's

♣ **Disclai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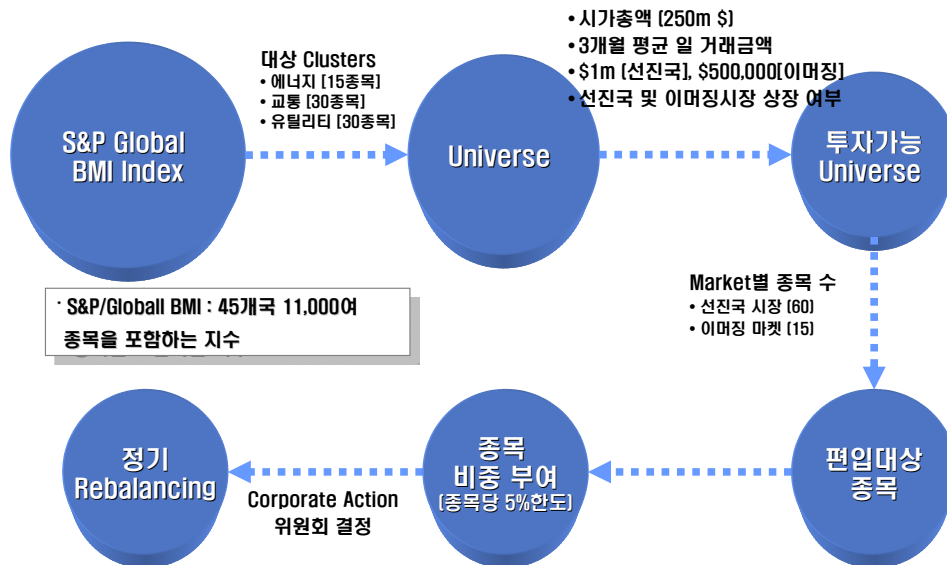
◆ “Standard & Poor’s®”, “S&P®”, “S&P Global Infrastructure®” 는 McGraw-Hill, Inc. 의 등록상표이며, 산은자산운용(주) 에 의한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McGraw-Hill Companies, Inc. 의 일부인 Standard & Poor’s (“S&P”)는 본 예금상품을 보증, 지지, 판매 또는 판매 촉진하지 않습니다. S&P 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또는 특히 본 상품에 대한 투자의 적부 및 S&P 지수가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성과를 반영하는 능력 등에 관하여 본 상품의 투자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S&P와 라이선스 이용 자 사이의 유일한 관계는 “(가) S&P의 특정 등록상표와 상호, 그리고 (나) 라이선스이용자 또는 본 상품과 무관하게 S&P가 결정, 구성, 계산하는 S&P지수를 라이선스”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S&P는, S&P지수를 결정, 구성 또는 계산함에 있어서 라이선스이용자 또는 본 상품의 투자자의 필요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S&P는 본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그 시기의 결정 또는 본 상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산식의 선정 또는 계산에 책임을 지지 아니며 이에 참가한 바도 없습니다. S&P는 본 상품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여하한 자료의 정확성 및/또는 완벽성에 관하여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의 오류, 누락 또는 중단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자료의 사용 으로부터 라이선스이용자, 본 상품의 투자자 및 기타의 개인 또는 기관이 얻는 결과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 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여하한 자료에 대하여 그 시장성 또는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사용에의 적합성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이에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상기 사항에 더하여, S&P는 비록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해, 징벌적 배상, 간접손해 또는 파생적 손해 (일실이익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관리 및 편입

- 신탁재산의 90% 수준에서 글로벌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
-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을 지수비중에 맞추어 편입 -> 지수 내 종목교체 및 주식분할 등 개별 비중변동 요인 발생시 또는 추적오차 과도시 리밸런싱

■ 인프라 지수 구성 Flow



## 다. 위험 관리

###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 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 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 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 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 정책을 수립하며, 성과평가 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 ■ 환위험 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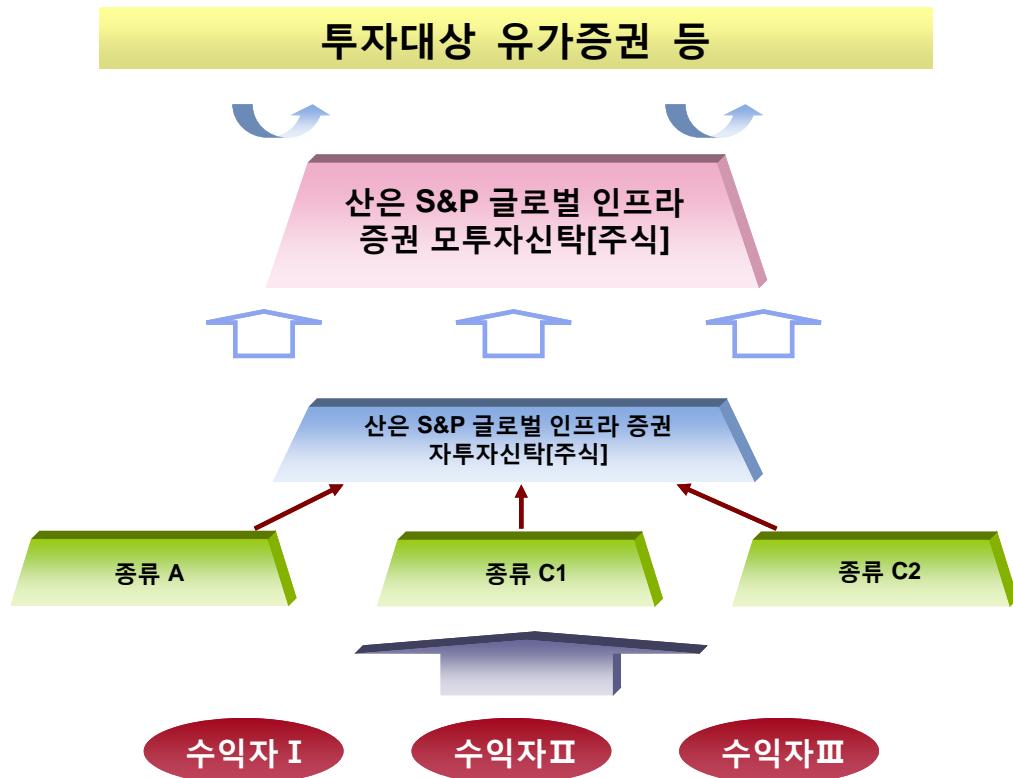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헷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평가액의 90% 수준[USD(\$) 환산평가액 기준] 환헷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헷지는 원화 대비 USD의 가치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USD의 가치가 원화대비 급상승(원화환율이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환차손을 충당하기 위해 불리한 시장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해외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등 자산운용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결과적으로 예상밖의 수익률 하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환당국의 개입 기타 요인으로 인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간 큰 폭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일시적으로 동 괴리폭만큼 기준가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헷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헷지비율은 목표헷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신탁재산의 70% 이상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주로 결정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합니다. 또한 미달러화 헷지시에도 만



	<p>기 불일치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원달러환율 선물계약의 만기는 투자신탁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위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의 시장 환율 및 선도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환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투자수익 부분은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는 환 위험 헤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어 국내 통화로 환전되는 시점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p> <p>당 펀드가 추가형/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환매 및 추가설정에 따라 소액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환위험 헤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헤징 가능 시점에 따라 일정 기간 환위험 헤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p>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p>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거래상대방위험	<p>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p>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문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산은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 등급	위험 수준 내용	투자대상 상세	적합한 투자자 유형
-------	----------	---------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 <sup>1)</sup> 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을 추구하면서 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 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환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50% 이 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 및 일부 안정 적인 장기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 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안정적인 장기수익 및 일부 높은 수 준의 자본소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4등급	낮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채 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MMF 등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단기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

- 1) 고위험자산: 주식, 파생결합증권,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관련 자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단, 고위험자산 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 원금보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음
- 2) 각 위험등급 내 투자대상 편입비율은 평균수준을 나타내며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3) 투자대상 상세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사한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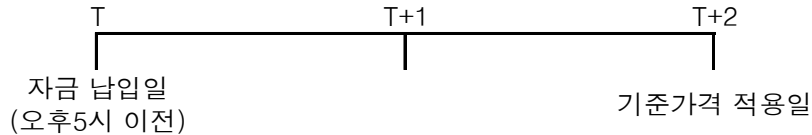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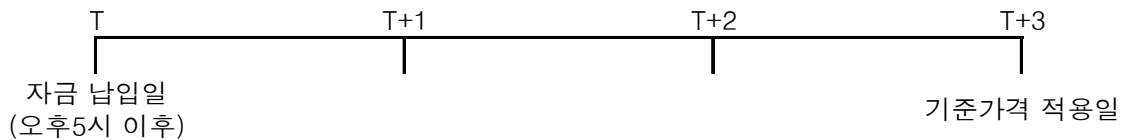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음
종류 C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매입청구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 환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③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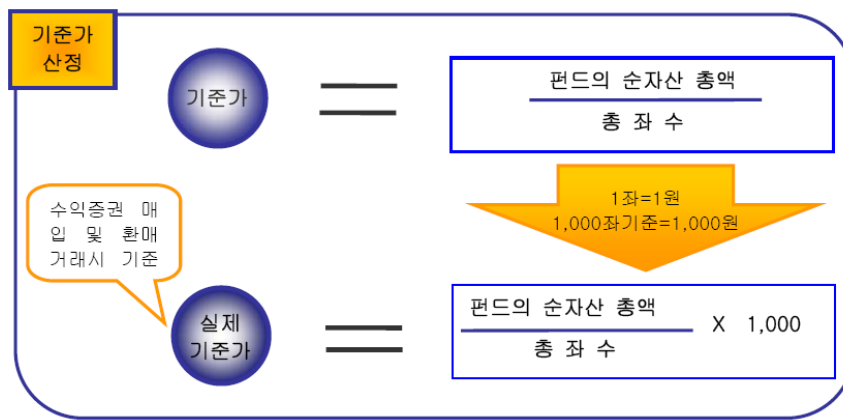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한국금융투자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상장자산유동화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한정)
비상장자산유동화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자산유동화증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법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음
종류 C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및 집합투자기구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0%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 전부해지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 업자 보수	연 0.90%	연 1.50% 주 7)	연 0.00%	
신탁업자 보수	연 0.09%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125%			
기타 비용	연 0.00%	연 0.0000%	주 6)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1.7025%	연 2.3025%	연 0.8025%	-
합성총보수비용	연 1.8732%	연 2.4569%	연 0.8025%	-
증권 거래비용	연 0.2222%	연 0.3693%	주 6)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기간(2010.4.10~2011.4.9)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2010.4.10~2011.4.9)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종류C2 수익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2011.5.31) 현재 미설정되었으므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7) 종류 C1 수익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율은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의 보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a. 2012년 5월3일~2013년 5월 2일: 연 1.30%

b. 2013년 5월 3일 이후: 연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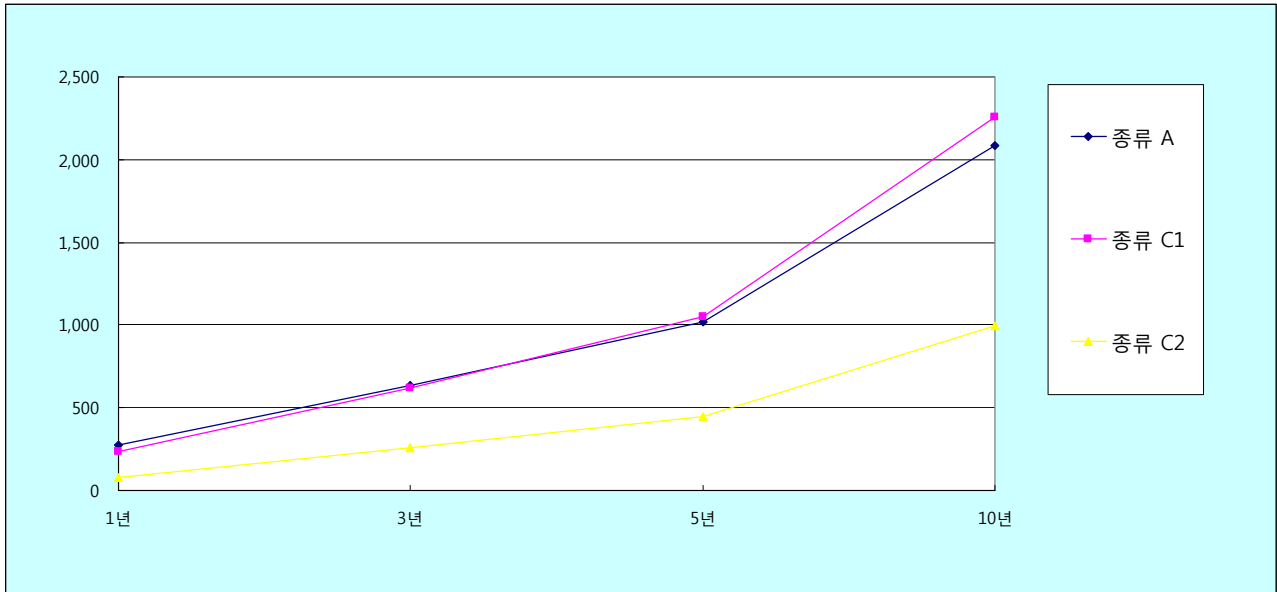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3	632	1,015	2,0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73	632	1,015	2,086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6	621	1,053	2,2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6	621	1,053	2,255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257	447	9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2	257	447	99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C1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매년 판매보수가 인하됨을 감안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위 (1)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3)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4)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9)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거나,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4기는 신한회계법인, 제2기 및 제3기는 화인경영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 2011.04.09 )	( 2010.04.09 )	( 2009.04.09 )
운용자산	7,571,166,649	18,741,971,943	16,104,680,229
증권	7,560,317,988	18,641,475,082	15,629,816,81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848,661	100,496,861	474,863,41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9,028,428	351,039,875	2,187,793
자산총계	7,630,195,077	19,093,011,818	16,106,868,02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8,852,299	151,322,237	7,216,986
부채총계	58,852,299	151,322,237	7,216,986
원본	8,763,861,417	24,504,355,572	28,079,909,564
수익조정금	5,794,387	-556,738,314	508,719,827
이익잉여금	-1,198,313,026	-5,005,927,677	-12,488,978,355
자본총계	7,571,342,778	18,941,689,581	16,099,651,036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 2010.04.10 - 2011.04.09 )	( 2009.04.10 - 2010.04.09 )	( 2008.04.10 - 2009.04.09 )
운용수익	792,321,588	5,450,123,168	-12,850,701,850
이자수익	2,483,323	3,915,032	33,110,95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789,838,265	5,446,208,136	-12,883,812,804
기타수익	273,432	234,735	589,661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990,908,046	10,456,285,580	-361,133,834
당기순이익	-1,198,313,026	-5,005,927,677	-12,488,978,355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가. 요약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나.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가. 요약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다.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제4기(2011.04.09)		제3기(2010.04.09)		제2기(2009.04.09)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10,848,661	100,496,861	100,496,861	474,863,414	474,863,41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848,661		100,496,861		474,863,414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69,990,056		0		0
1. 콜론	69,990,056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7,490,327,932		18,641,475,082		15,629,816,815
1. 자본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7,490,327,932		18,641,475,082		15,629,816,815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0		0		0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59,028,428		351,039,875		2,187,79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000,000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8,428		39,875		187,793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59,000,000		351,000,000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7,630,195,077		19,093,011,818		16,106,868,022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58,852,299		151,322,237		7,216,98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57,643,817		149,419,177		2,948,966	
4. 수수료미지급금	1,208,482		1,903,060		1,729,910	
5. 기타미지급금					2,538,110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58,852,299		151,322,237		7,216,986
<b>자 본</b>						
1. 원 본	8,763,861,417		24,504,355,572		28,079,909,56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192,518,639		-5,562,665,991		-11,980,258,528	
(발행좌수 당기: 8,763,861,417 좌						
전기: 24,504,355,572 좌						
전전기: 28,079,909,564 좌)						
(기준가격 당기: 863.93 원						
전기: 772.99 원						
전전기: 573.35 원)						
이익잉여금	-1,198,313,026		-5,005,927,677		-12,488,978,355	
수익조정금	5,794,387		-556,738,314		508,719,827	
<b>자 본 총 계</b>		7,571,342,778		18,941,689,581		16,099,651,036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7,630,195,077		19,093,011,818		16,106,868,022

나.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4기 (2010.04.10-2011.04.09)		제3기 (2009.04.10-2010.04.09)		제2기 (2008.04.10-2009.04.09)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1. 투자수익		2,756,755		4,149,767		33,700,615
1. 이 자 수 익	2,483,323		3,915,032		33,110,954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273,432		234,735		589,661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33,939,018		5,446,243,788		170,297,381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204		49			
7. 기타거래차익	933,938,814		5,446,243,739		170,297,38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4,100,753		35,652		13,054,110,185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4,789		3,122			
8. 기타거래손실	144,085,964		32,530		13,054,110,185	
<b>운 용 비 용</b>		1,990,908,046		10,456,285,580		-361,133,834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990,908,046		10,456,285,580		-361,133,834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198,313,026		-5,005,927,677		-12,488,978,355
<b>과당순이익(또는 과당순손실)</b>		-0.136733452		-0.204287261		-0.44476561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종류A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4.10 - 2011.04.09	116	85	0	0	48	35	68	55
2009.04.10 - 2010.04.09	140	77	1	1	26	18	116	85
2008.04.10 - 2009.04.09	177	176	4	4	42	38	140	7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종류C1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4.10 - 2011.04.09	146	104	1	1	121	85	26	20
2009.04.10 - 2010.04.09	153	83	2	1	9	6	146	104
2008.04.10 - 2009.04.09	175	173	3	2	25	23	153	8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종류C2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4.10 - 2010.04.09	0	0	0	0	0	0	0	0
2008.04.10 - 2009.04.09	1	1	0	0	1	1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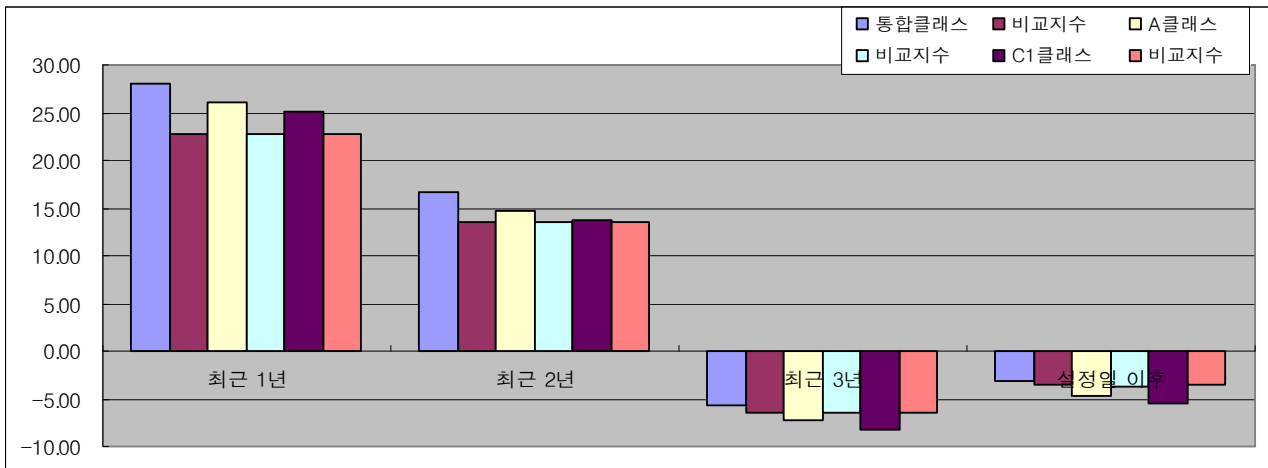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설정일 이후
	10.06.01 ~11.05.31	09.06.01 ~11.05.31	08.06.01 ~11.05.31	07.04.10 ~11.05.31
통합클래스	28.11	16.62	-5.67	-3.04
비교지수	22.83	13.57	-6.51	-3.44
A 클래스	26.02	14.69	-7.27	-4.77
비교지수	22.83	13.57	-6.51	-3.74
C1 클래스	25.09	13.69	-8.14	-5.58
비교지수	22.83	13.57	-6.51	-3.44

주1) 비교지수: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상기 수익률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1.5.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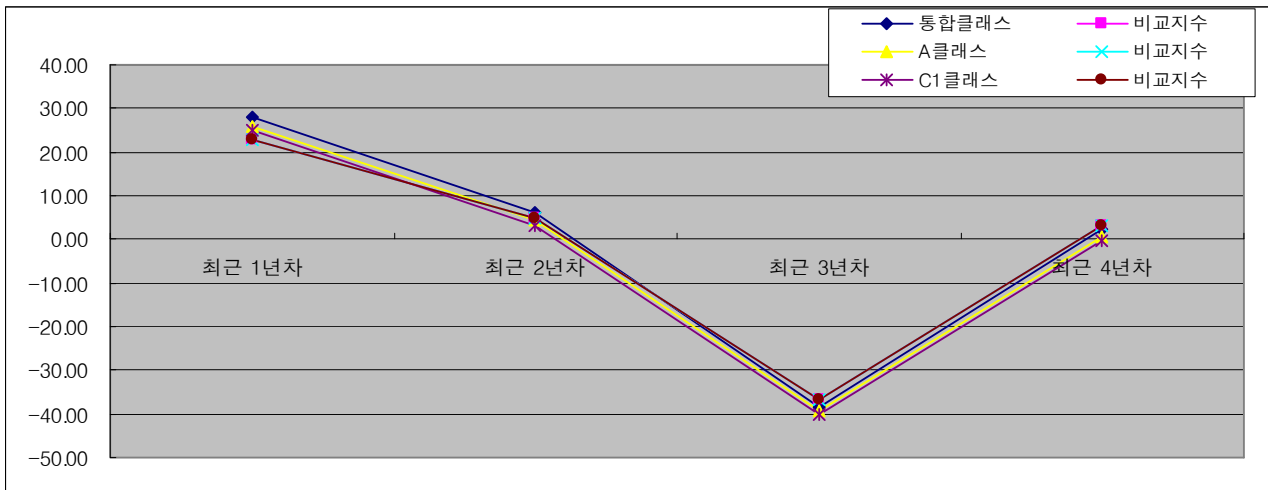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10.06.01 ~11.05.31	09.06.01 ~10.05.31	08.06.01 ~09.05.31	07.06.01 ~08.05.31
통합클래스	28.11	6.16	-38.27	2.40
비교지수	22.83	5.00	-36.65	2.95
A클래스	26.02	4.38	-39.39	0.70
비교지수	22.83	5.00	-36.65	2.95
C1클래스	25.09	3.33	-40.03	-0.29
비교지수	22.83	5.00	-36.65	2.95

주1) 벤치마크: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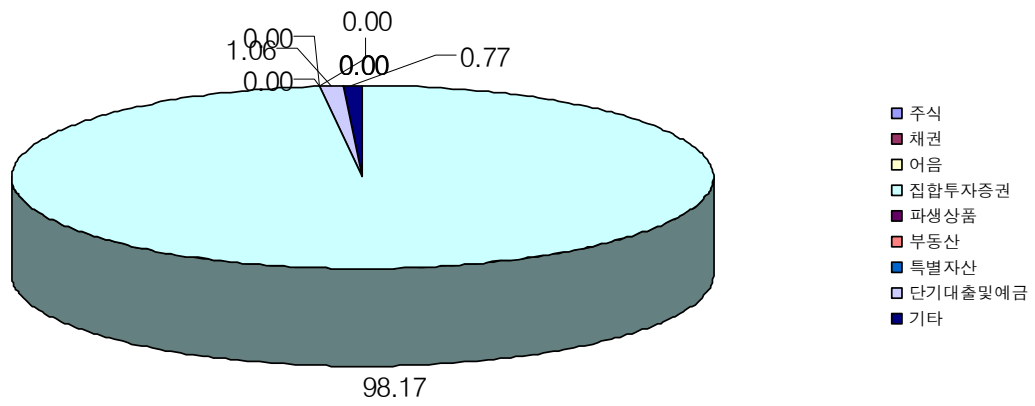
4) 상기 수익률은 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1.5.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1.4. 9 기준,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75	0	0	0	0	0	1	1	76
	(0.00)	(0.00)	(0.00)	(98.17)	(0.00)	(0.00)	(0.00)	(0.00)	(0.00)	(1.06)	(0.77)	(100.00)
합계	0	0	0	75	0	0	0	0	0	1	1	76
	(0.00)	(0.00)	(0.00)	(98.17)	(0.00)	(0.00)	(0.00)	(0.00)	(0.00)	(1.06)	(0.7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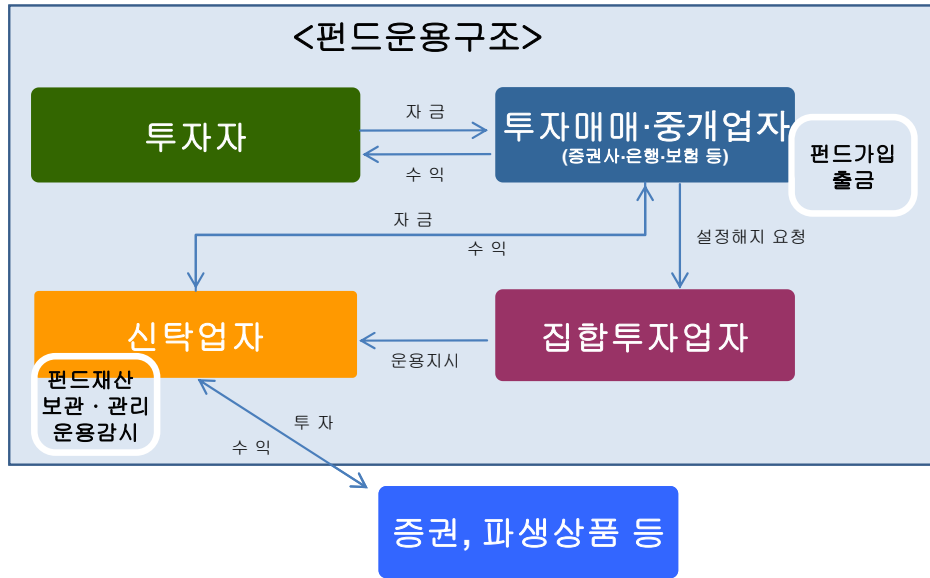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국가 구성내역 >

(2011.4.10 기준, 단위: 억원, %)

거래국	해외주식	
	금액	비중
호주	5	7.31%
버뮤다	1	0.95%
브라질	1	1.55%
바하마	0	0.44%
캐나다	7	9.75%
스위스	1	0.97%
칠레	1	0.78%
중국	1	1.85%
독일	6	7.99%
스페인	4	6.16%
프랑스	6	7.99%
영국	5	6.64%
홍콩	4	4.99%
이탈리아	5	7.01%
일본	3	3.89%
멕시코	1	0.81%
네덜란드	1	1.74%
뉴질랜드	1	0.93%
포르투갈	1	0.98%
싱가포르	1	1.83%
미국	18	25.45%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www.kdbasset.co.kr)
회사 연혁	1996. 5 회사설립(서울투자신탁운용) 1997. 5 투자자문업등록, 투자일임업허가 1998.12 자산운용회사등록 2000.06 증자(최대주주 대우증권 변경) 2004.05 증자(최대주주 산업은행 변경) 2004.07 산은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89 억원(2011년 3월말 기준)
주요주주현황	산은금융지주(100%)

#### 나. 주요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1.3.31	'10.3.31	항 목	'10.4.1~ '11.3.31	'09.4.1~ '10.3.31
I. 현금및예치금	36,682	54,268	I. 영업수익	13,669	13,288
II. 유가증권	28,655	11,363	II. 영업비용	12,056	9,412
III. 대출채권	617	666	III. 영업이익	1,612	3,876
IV. 유형자산	629	719	IV. 영업외수익	16	38
V. 기타자산	8,167	7,850	V. 영업외비용	6	620
			VI.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1,622	3,294
			VII. 법인세비용	392	984
<b>자산총계</b>	<b>74,751</b>	<b>74,866</b>	<b>당기순이익</b>	<b>1,230</b>	<b>2,310</b>
I. 예수부채	158	69			
II. 기타부채	7,081	7,814			
<b>부채총계</b>	<b>7,238</b>	<b>7,883</b>			
I. 자본금	38,895	38,895			
II. 자본잉여금	6,529	6,529			
III. 이익잉여금	22,088	21,559			
<b>자본총계</b>	<b>67,512</b>	<b>66,983</b>			

**라. 운용자산 규모**

(2011.5.31 현재 / 억원)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계
수탁고	4,203	1,415	20,045	19,925	4,793	1,837	7,667	52,216	-	112,10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02)2073-7114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1년 01월 국민·주택 합병은행,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www.Kbstar.com)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건물 4층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 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업무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지점,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http://www.kdbasset.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kdbasset.co.kr)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 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p>&lt;투자증권거래&gt;</p>	<p>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li> <li>-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li> <li>-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li> </ul>
	<p>②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중개회사를 선정한다.</li> <li>- 선정된 중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li> </ul>
	<p>③중개회사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li> <li>-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한다.</li> <li>- 중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결과는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한다.</li> <li>-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이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한다.</li> </ul>
<p>&lt;장내파생상품거래&gt;</p>	<p>&lt;투자증권거래&gt;의 경우와 같음</p>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투자신탁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집합투자재산의 5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왵	금리스왵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왵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집합투자계약(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절취선**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